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양송이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70호로 2025년 8월 14일 양송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법령에 대한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나. 기존에 사용료 30% 감면 대상이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을 삭제함(현행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 사고·질환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군인·경찰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보훈 체계를 개편하여 각 대상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구분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 2023년에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50% 감면** 〈신 설〉 **2. 30% 감면**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감면할 수 있다. **1. 50% 감면**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30% 감면** 〈삭 제〉

- 기존에 사용료 30% 감면 대상이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1]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삭제하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용료 50% 감면 대상으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에 신설함.

---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삭제 조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 신설 조항**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종합의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하여 고궁과 공원 등(공공체육시설 포함)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2023.1.17.) 되었음.
- 대상 시설 및 감면율은 동법 시행령 별표 9의2[3]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요금에 대해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혜택 대상자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4]에 의거 "보훈보상대상자"와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함.
- 우리 구(區) 현행 조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30% 감면만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신설 2023. 7. 1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30% 감면 대상이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50% 감면 대상으로 변경하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현행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 공상군경)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들은 대부분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 재해나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므로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측면에서 지원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체육시설 감면 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 고 자 료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